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 확인 의무〉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453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4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8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양부남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8. 28.

(3) 회 부 일 : 2025. 8. 2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되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됨.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또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잦은 오인신고·오작동이 실제 안전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음.

현행법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오인신고·오작동 등 실태를 점검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인신고·오작동 발생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며, 의료현장의 범죄·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

이 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36조에 따라 설치한 보안 장비(비상경보장치 등)의 오작동,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및 유지, 관리 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6조의2</u>(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생 략)	<u>제36조의2</u>(보안장비 점검) 의료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보안장비(비상경보장치 등)의 오작동,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및 유지·관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u>제36조의3</u>(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현행 제36조의2와 같음)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36조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6¹⁾에 따라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보안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

- 동 조항들은 2018년 12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각각 2019.4.23.(법 제36조제11호) 및 2020.4.24.(시행규칙 제39조의6) 신설되었음.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0년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100병상 미만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대당 75만원(월유지비는 의료기관 부담) 한도로 비상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음.

의료기관에서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 후 협조공문을 통해 경찰서 내부 112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비상경보장치 작동 시 관내 경찰 상황실로 연결됨.

1)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1호에 따라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2.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것
3.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4.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을 제작하여 의료기관의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 의료기관에 경찰관서의 상황실과 바로 연결되는 비상경보장치 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 확보와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오작동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라는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보임.

- 2021년부터 2025년 6월 사이 전국 공중화장실 등의 비상벨 작동은 총 105만건에 달하며, 이 중 38만 6천건(36.7%)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²⁾

-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의 오작동 횟수는 정상작동 횟수의 15.5%에 이르며, 이로 인한 경찰출동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비상경보장치 운용 현황 (종합병원 이상*, '24.1월~'25.8월) >

구분	작동 횟수	경찰출동 횟수
정상 작동	503	476
오작동	78	40
합계	581	516

* 대상 379개('25.9월 기준), 단순 작동점검 등은 횟수에서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 오인신고나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은 경찰력의 낭비를 유발하는 한편, 다른 긴급상황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도 지장을 초래하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보안장비의 오작동 등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경찰력의 낭비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2) 양부남의원실 보도자료(2025.8.28.)

- 참고로 동 개정안과 함께 비상경보장치 설치 규정이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각각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³⁾

□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오작동,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및 유지·관리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비상경보장치의 오작동 및 오인신고 실태 확인은 오인신고 및 오작동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확인토록 하는 것은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따라서 오작동 방지를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오인신고 예방을 위해 양방향 통화가능 모델을 설치토록 하거나, 단방향 모델인 경우 실수로 신고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를 부착하며, 오작동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정검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양방향 통화가능 모델은 경찰에 음성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어 긴급상황에서 실효성이 낮을 우려가 있음.

3)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4건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246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246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2458)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2472)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둘째,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4)에 따라 비상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음. 이는 「의료법」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보안장비가 아니므로, 개정안에 따른 보안장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함.

□ 셋째, 현행법 제36조제11호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에게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안장비의 구체적인 종류로서 ‘비상경보장치’의 설치 의무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법률에서는 ‘보안장비’의 관리 의무를 부여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여 ‘비상경보장치의 오작동 및 오인신고’에 관한 관리 의무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토록 하거나, 법률 제36조제11호를 함께 개정하여 법률에서 직접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

①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에 따른다. 이 경우 「의료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9조 제1항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11조제1항 관련)

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 및 장비

다. 진료실

1) 정신의료기관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진료실을 두어야 하고, 전문 진료실에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비상문, 비상대피공간 또는 개인방호도구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사. 그 밖의 사항

2) 비상경보장치 중 하나 이상은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장치여야 한다.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경보장치 등 점검 의무 마련 필요성에 공감함. 다만, 비상경보장치 설치 및 보안전담인력 배치를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기 점검 주기 등은 하위법령 등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대한의사협회 (반대)

- ☐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례 등 관련 실태조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며, 보안장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행정적 규제에 해당하므로 동 개정안에 반대함.

3) 대한치과의사협회 (반대)

- ☐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가중되므로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비상경보장치 점검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권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4)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찬성)

- ☐ 보안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오인 신고나 오작동 등 실태를 점검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안전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해당 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494